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2447	강준현의원	2024. 7. 3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4. 11. 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12. 3.)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7. 22.) 및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1.)에 상정
2205252	유영하의원	2024. 11. 5.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5. 2.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7. 22.) 및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1.)에 상정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17825	신장식의원	2026. 3. 2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회부

가.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5. 11.)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6. 5. 14.)는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填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반복됨.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 제96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은 재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조차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신설, 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

조제2항의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조사 요청의 대상·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 제목 “(기록의 송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

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을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으로,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을 “그 자료의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1조의 제목 “(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당 손해의 증명”을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로,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를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1조제1항”을 “제110조·제1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사자는”을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의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u> <u>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u>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조사 요청의 대상·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① -----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그 자료의 제출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

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illegible]

1. -----

----- 제110조 · 제111조 -----

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u>당사자</u>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u>당사자</u>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⑤ (생략)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신설></u> 1. ~ 4. (생략)	----- 2. ----- ----- ----- <u>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u>----- ----- ----- ----- ----- ② <u>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u>는-----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 ----- ----- ----- ----- ----- -----. <u>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 4. (현행과 같음)
---	---